

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 공고 제2024-26호

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권 중단(철회)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
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권 중단(철회) 처분을 위해 대상자에게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4. 4. 24.

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장



1. 건 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권 중단(철회)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
2. 근 거: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 제6조, 12조,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, 같은법 제29조 및 동법시행규칙20조
3. 공고대상자 및 내용

연번	성명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 내용			송달불능 사유	주소
				처분 제목	처분 사유	처분 내용		
1	강○원	'99.9.21.	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권중단(철회) 조치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	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권중단(철회)	연락두절 및 2회에 걸친 방문상담일자-의무부과 재지정 안내서 통지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불이행 등	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권중단(철회)	폐문부재 등	경북 구미시 대학로 (이하 생략)
2	유○의	'97.5.27.	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권중단(철회) 조치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	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권중단(철회)	연락두절 및 2회에 걸친 방문상담일자-의무부과 재지정 안내서 통지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불이행 등	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권중단(철회)	폐문부재 등	경북 구미시 수출대로31 (이하 생략)

4. 공고기간: 2024. 4. 24. ~ 2024. 5. 8.

5.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 구미고용센터 김정원직업상담원(Tel. 054-440-3345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